

제 정 2024. 02. 19.

개 정 2026. 06. 08.

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애경케미칼 주식회사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애경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회사의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한다.

제4조 (정의)

'ESG 관련 활동'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고취하며, 환경/사회/지배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줄이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지칭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위원이라 한다)은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 원 총수 의 3 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독립 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독립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회의의 종류 및 소집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 단, 의결사항이 없을 경우는 소집하지 않는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.
 1. ESG전략과 실행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2.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3. 중요 ESG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의사 결정 필요사항
 4.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 1.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/수시 진행사항
 2. ESG 관련 이슈 발생 시 관련사항
 3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
- ③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24.02.19)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06.08)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